주요 사건 수행 내역

1. 법률 자문
가. 가짜 주식 거래소 유도 유사수신행위/사기 관련 자문1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4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판단5
2. 송무 관련 업무
가. 불법 집회 시위 대응 자문서
나. 정보공개 청구 관련 행정소송 답변서 검토의견서7
다. 경과실 경찰관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취득 여부 검토의견서8
3. 법무
가. 경직법 감면규정/경찰관 면책규정 관련 해외 입법례9
나.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 책임 해외 법률 체계 12
4. 기타 자문 사건 목록14

<유사수신행위 관련 피해 구제 자문 의견서>

1. 기초 사실

전 직장에 대한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다소 개략적으로만 서술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사건:

텔레그램으로 유도 후 자금 환전하게 한 뒤 주식거래 시스템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은 후 투자금 회수 목적 출금 시 수수료, 00자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사기

->가짜 거래소 유도 사기

-쟁점: 부정 계좌에 있는 일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구제 방법

2. 유사 수신행위 해당 여부 및 구제 방법

가. 유사수신행위

유사 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u>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u>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 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원금 보장, 손실보전을 약정하거나 원금 이상의 금액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자금은 00자금이라고 하는 투자금으로서 **사업의 실체 없이** 주식 매매 등을 가장하였고 투자금 출금 시 추가 자금을 요구한 경우이므로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u>형법 제 347조 사기죄</u>에 해당하고 <u>이득액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 적용</u>됩니다.

나. 피해자금 회수 방법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 또는 사기죄로 <u>형사고소 후 합의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회수</u> 하거나 <u>민사소송(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u>으로 투자금을 회수하 는 방법이 가능하고 **가압류를 통해 피해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해당 통장이 대포 의심 계좌로 부정사용등록 계좌로 등록되어 있다면 대<u>포 의심 계좌 명의인의 범죄 가담 여부에 따라</u> 피해금 회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대포통장 명의인이 유사수신행위에 <u>가담하지 않은 경우</u>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바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u>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0.11.11.</u> 선고 2010다41263,41270판결). 이 경우 계좌 명의인에게 연락하여 권원 없이 송금받았다는 사실인정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민법 제 748조에 의하여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소제기와 함께 채권 가압류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②대포 통장 명의인이 유사수신행위에 <u>가담한 경우</u> 통장 명의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대여한 행위자로서 접근매체 양도·대여 당시 그 통장이 유사수신 행위 등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u>견 가능하였다고 보여진다면</u> <u>가해자와 함께 과실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u>가 성립되므로 민법 제 76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제 3조는 효력 규정 즉 강행법규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나90452) 유사수신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통장 명의인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 기타 조언

통장 명의인 계좌명 및 계좌 번호 외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 정보 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 294조, 금융실명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제출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 29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 2항 제 8호) 하여 회신이 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정하여야 하고 조회 사항은 계좌의 범행 당월부터 현재까지의 거래 내역 및 잔고와 계좌명의자의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일체, 가입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자문 의견서>

1. 기초 사실

사건: 피의자 A,B,C 휴대전화, 신분증, 보안 카드 등 합동 절도 후 피해자 계좌 자금 취득 및 인터넷에서 금제품 주문

쟁점: 피의자 B,C 이체 범행 이후 범행 가담 부인, 공모 공동정범 처벌 가능성 및 실행의 착수 시점

2. 답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은 사람의 의사를 대신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직접 사기 범행을 실행한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법원은 공모자가 단순 가담자인 경우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이탈의 의사표시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을 긍정하는 견해입니다.

사안의 경우 계좌 이체 방법을 통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죄에 대한 전체 공모 과정 및 제반 사정 상 B,C 는 A가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여 생성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00 결제 건에 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공모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타인 계좌의 현금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합동 절도의 범행과 휴대폰 패턴 해제, 비밀번호 변경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실행을 위한 예비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범 A의 실질적인 실행의 착수 시점은 이체 상대와 금액이 특정된 이체 행위를 하기 위한 명령을 입력하기 시작한 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B·C 는 공모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역할 분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 가담자라고 판단됩니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묵시적 이탈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공범의 이탈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B,C 는 공범 A가 실행에 이르기 전 이탈하였으므로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질의

1.기초 사실 (생략)

2.문의 사항

- -진단서에 병명 질병분류 기호 등 기재 시 민감정보 해당 여부
- -개인정보 **외부 유출 또는 공익적 목적(내부 의사판단) 으로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의율 가능 여부

3. 검토 의견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 적용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 제 1항 상 병명, 질명 코드 등이 기재된 진단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법 제 23조 제 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민감 정보 처리가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생략) 고용 절차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가 많고 해당 동의서 내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위 동의서를 제출하였는지, 해당 동의서 내 민감정보에 관한 수집 동의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만약 동의한 사정이 있다면 동법 제 23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생략) 은 병가 승인 목적으로 민감정보인 진단서를 처리할 수 있 습니다. 만약 동의서에 민감정보 항목이 따로 없다면 제 23조 각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 23조 위반입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위반 가능성-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동법 제 18조 제 1항 전문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 18조 제 2항의 경우 목적 외 이용이 가능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제한 범위를 초과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생략) 동법 제 15조 제 1항의 제 1호·제 3호·제 6호 및 나머지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 18조에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생략) 인사 위원회는 (생략) 에 속한 조직으로 통상 직원 인사관련 안건을 처리한다면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결론

-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제 2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항목이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면 동법 제 23조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 71조 제 3호로 처벌됩니다.

<불법 집회·시위 대응 자문서>

1. 소음을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인 폭행으로 인정한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1 고단 2874 검찰 청사 화단에 있는 나무에 확성기 설치-유죄

2. 특수협박죄 처벌 가능성

가. 관련 판례

노조가 집회 시위 중 사측에게 집회 가능성 관련 해악을 고지, 공동협박죄 처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3. 19. 선고 2017 고단 316

- 3. 경범죄처벌법 인근 소란행위 적용 가능성
 - 가.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1 고단 2874

나. 사안의 경우

(생략)

- 4. 소음 기준 초과 시 공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1층 입점한 민간 업체인 커피숍, (생략)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 가. 관련 판례

2004. 10. 15. 2004도 4467[업무방해]

- 정당행위 불인정
- 대구 중구청 앞 신고한 옥외 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소음이 82.9 db 내지 100.1 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 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인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구성합니다.
- 나. 사안의 경우

(생략) 판례는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 하여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 있습니다.

5. 집시법 위반죄 검토 의견(생략)

<정보공개 청구 관련 답변서 검토>

1.결론

- -공개 청구한 자료의 범위가 '생략' 자체로서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불특정' 사유로 각하를 구하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 대중에게 해당 '생략'이 공개되지 않고, 목차도 공개되지 않는다면 사회통념 '생략' 중일부분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자료 전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할수 밖에 없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 10조 제 1항 제 3호 상으로도 청구권자인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 사유를 소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 시행령, 시행규칙 상으로도 사유 소명,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 3조에 따라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원칙인바 사유를 소명하라는 요구는 법령· 규칙 상 없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 '생략' 이라는 답변은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법 제 14조 부분 공개에 있어 '분리가능성'판단 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 ※ 해당 답변은 '특정'의 주체를 피청구인인 (생략)을 상정하고 있고, (생략)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의 특정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 -청구인 또한 정보공개법 제 9조 사유가 없는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분리가능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특정 여부 판단 근거

- ① 2007두 2555
 -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족합니다.
 - -사안의 경우 (생략)
- ② 특정/ 불특정 정도의 예시
 - 2014두 5477
 -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불특정
 - 이후 '방통위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일체'로 청구취지 변경한 경우 비공개 열람절차를 거친 후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시

3. 대안

-정보공개법 제 14조 부분 공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분리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생략)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 간 분리가능성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이 보다 적합합니다.

<경직법 감면 규정/ 경찰관 면책 규정 관련 해외 입법례>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싱가포르

※현안 관련 사안으로 최대한 내용 생략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호주

가. 결론

- -노던 준주, 퀸즐랜드주, 뉴사우스웨일스주(시드니 소속), 남호주, 서호주 등 각 주에 시행 중인 경찰 관련 법상 경찰관 민·형사 면책 규정 존재합니다.
- -남호주의 경우에는 <u>경찰관 피고적격 배제 규정, 소송 비용 지원 규정도 있습니</u> 다.
- -연방 국가인 호주는 자치 경찰인 주 경찰이 중심이 되어 각 주별 경찰 법률 및 제도 가 있습니다.

나. 법적 근거

- 1) 노던 준주 경찰행정법 (Police Administration Act 1978) (생략)
- 2) 퀸즐랜드주
 - -경찰행정법 1990 (생략)
 - -경찰 권한 및 책임법 제 (생략) 조 '통제된 활동'
- 3) 뉴사우스웨일스 경찰법 1990 (생략)
- 4) 남호주 경찰법 1998 (생략) 남호주 경찰과 경찰보안담당자의 책임에 대한 보호
- 5) 서호주 경찰법 1982 Ⅷ 기타 제 (생략)

2. 미국/ 캐나다

가, 미국

1) 결론

- -한정 면책 판례 법리로 연방 정부 공무원에 대한 민사 책임 배제
- -각 주 별 민사 책임 배제 조항 존재
- -주 별 제도화된 구체적 법률(act) 상 민·형사 배제 규정 존재
- 2) 법적 근거

- 가) 연방 공무원에 대한 면책 판례 법리-명확하게 수립된 헌법적, 법적 권리요건 (clearly established statutory or constitutional rights) 침해
- 나) 주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
 - (1) 결론

각 주 별 제도화된 특정 법률상 민·형사 책임 배제 규정 존재합니다.

- (2) 법적 근거
 - ① 뉴욕시티 행정법(조례) title 14: Police 제 1장 (생략)
 - ② 2022 코네티컷 일반 법률 title 17a (생략)
 - ③ 2022 뉴저지 개정법령 title 26 (생략)
 - ④ 2022 뉴저지 개정법령 title 40A (생략)

나. 캐나다

1) 결론

마니토 주 주취자 유치법 상 민·형사 책임 배제 규정 존재합니다.

2) 법적 근거

주취자유치법 (the intoxicated persons detention act C.C.S.M. c 190)

3. 프랑스

가. 결론

- -민사 면책, 소송 비용 지원, 소송 방어 지원
- -형법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u>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u> 배제
- 나. 법적 근거
- 1) 프랑스 치안법전(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제 (생략) 조
- 2) 일반 공무원법 제 134-*조
- 3) 일반 공무원법 제 1절 징계 및 형사 책임 L125-(생략)조

4. 독일

9

가. 결론

- 고권적 영역: 기본법 제 34조에 의하여 국가 대위 책임(anstelle)
- 사법상 영역: 책임 있습니다. 다만 직무자가 과실로 행동했고 피해자가 제 3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배상 청구가 상당한 방식으로 사실상 관철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에 대한 직무상 책임 청구가 배제됩니다(보충성).

- 나. 법적 근거
- 1) 기본법 제 34조
- 2) 민법 제 839절

4. 싱가포르

가. 결론

발부받은 영장의 권한에 따라 수행된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유리한 판결 내려야 한다는 규정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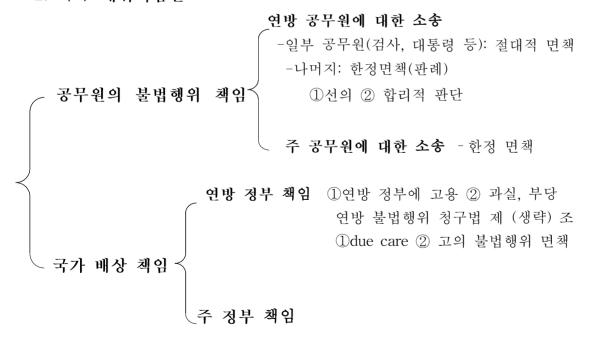
나. 법적 근거

경찰법 제 (생략) 조 제 3편 경찰관의 의무와 규율 경찰관의 의무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 책임 관련 해외 법률 체계>-김지우 변호사

1. 프랑스 - 자기 책임설 공무원 개인 책임-개인 과실(La faute personnelle)-관할 민사 과실책임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 국가배상책임 관할-행정 무과실책임(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2. 미국-대위책임설



3. 독일-인수 책임설->자기 책임설

가. 결론

-고권적 영역: 공무원 개인 책임 부담하지 않음

-사법상 영역: 민법 제 839조 단, 국가 선청구 지시 가능

나. 법률 체계

1) 고궈적 영역

공무원 개인 책임-민법 제 839조 ①고의 또는 과실 ②직무상 의무 위반 -단지 과실만 있는 경우->보충성

국가배상책임 - 독일 기본법 제 34조

- ①고권적 영역 ②직무 담당자
- ③고의 또는 중과실 시 공무원 구상 ④ 경과실 공무원 불구상

2) 사법상 영역

공무원의 민법 제 839조 책임 외 국가의 별개 민법상 책임

- ①공무원 법상 공무원 제 839조 제 1항 제 2문 국가에 대하여 선청구 지시 가능(Verweisung)
- ②공법상 직원 -국가와 직원 병렬책임 민법 제 823조 ->국가 선청구 불가

<경과실 경찰관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취득 여부 검토 의견서>

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자기책임설/대위책임설/절충설
- 파레는 자기책임설 또는 절충설 입장입니다.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기관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국가는 기관인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자기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의·중과실의 경우 기관 행위로서의 품격 상실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로 봅니다.

2. 관련 판례 2012다 54478

공무원에게 경과실 있을 뿐인 경우 경과실인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민법 제 469조의 '제 3자 변제' 또는 민법 제 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 취득합니다.

3. 사안의 경우

- -경찰관 개인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에도 (생략) 지급한 경우 경찰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취득하는지 여부가 쟁점
- -조정과 화해는 민사조정법 제 29조·민사소송법 제 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판결과 조정·화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보입니다.
- -그러나 구상 금액에 있어 민사 판결을 거치는 경우와 달리 조정·화해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서로 양보하여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12다 54478 판례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u>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내에서</u>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정·화해의 경우에는 변제 금액 자체가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그자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내라면 구상권 취득하나, 그 범위 외라면 대위 변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제소전화해 등으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문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문 의견서 목록>

업무 분과	주제(죄명)	내용(쟁점) 및 답변사항	참고
법무	불심검문 해외 입법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관련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해외 입법례 및 불응 시 처벌 조항 리서치	
법무	경직법 일반 직무조항 해외 입법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 직무 조항(제 2조) 관련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해외 입법례 리서치	
송무	국가배상책임 검토의견서	-경과실 책임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화해·조정 절차에서 배상시 국가에 대한 구상권 취득 여부 - 피해자에게 책임 범위 내 금액만 해당	
송무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사전통지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 검토 - 하자치유, 소각하 유도, 행정심판 전치주의 답변 조언	
법률해석	업무상 과실치상죄	-주유소 지붕 설치 작업 중 수리자가 상해 입은 경우 주유소 소유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의율 가능한지 -업무의 주체가 수리자 이므로 불가능 일반 과실치상	
법률해석	정보공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일시, 조사 소요 기간, 대면조사 여부 공개 가능성 -이미 조사 마쳐 동법 제 9조 제 6호 다. 의해 공개	
법률해석	정보공개	- 소년범 부모 피고로한 불법행위 손배청구 개인정보 제출 명령시 수사기관의 답변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 2항 제 8호 근거 가능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건 소관 경찰서장	
법률해석	절취 신용카드 구매 물품 관련 압수물 가환부	-도난 카드로 구입한 물품의 증거가치 고려하여 사진 촬영 등으로 압수물 대체하는 증거 보전 문제 해결 후 가환부 가능 답변	
법률해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죄	-불능미수 적용 가능성 검토 - 장애미수 해당, 보험사기 공동정범 의율 가능	
법률해석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텔레그램 이용 주식 매매 가장 폰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민사상 불법행위/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감사합니다.